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 국민은행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프랭클린템플턴그로스증권투자신탁 4(주식)
- 나.분류: 증권집합투자기구
- 다.보관.관리기간:11.06.17 ~ 12.06.16
- 라.집합투자업자: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주)
- 마.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광주은행, HMC 투자증권, 부국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삼성증권, 한화증권,
한국산업은행, HSBC 은행,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NH 농협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기업은행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12.05.03	법규변경 (공시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운용 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해당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교체.해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적합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적정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해당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공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적정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적정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해당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해당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 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